

평창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 위한
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

의안 번호	45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02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유형별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저감대책 및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략공사비 산정 등을 토대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평창군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으로서,
- 주민공청회 및 관계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검토 반영한 후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.

2. 주요내용

- 수립대상 : 평창군 전역(1읍 7개면)
- 대상재해 : 하상준설 및 유지시설, 사방댐, 하천재해, 내수재해, 토사재해, 사면재해 등
- 조사결과 : 평창읍 외 7개면 350개소에 4,114억원 소요

3. 참고사항

□ 주민의견 청취(공람공고)

- 가. 공람기간 : 2010. 11. 10 ~ 2010. 11. 24(14일간)
- 나. 공람방법 : 강원도민일보, 평창군 홈페이지 게재
- 다. 공람장소 : 평창군청 건설방재과
- 라. 제출의견 : 없음

□ 공청회 개최

가. 일 시 : 2010. 11. 26. 14:00. 나. 장 소 : 평창읍 대 회의실

다. 내 용 :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

○ 참석자 : 관계전문가 3명 [최창의교수, 서흥석교수 (주)삼안 조경준]

○ 지역주민 : 60명

○ 제출의견 및 검토반영 : 공청회 개최 이후 읍·면을 통하여 53건이 제출되어 35건을 추가 반영하였으며, 타 계획에 의하여 추진이 가능한 18건은 본 계획에서 제외하였음(“별첨참조”)

□ 관련부서협의

가. 협의기간 : 2010. 09. 07 ~ 2010. 09. 15

나. 협의부서 : 산림과, 환경과, 관광경제과, 상하수도사업소, 농축산과, 도시과, 원주지방환경청, 평창군국유림사업소, 농어촌공사(평창지사)

다. 제출의견 : 환경과 ⇒ 풍수해저감관련 사업시행시에 흙탕물방지시설, 생태계훼손 저감시설 등 환경분야 방지대책을 계획에 반영

□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: 2010. 10. 25

가. 관계전문가 : 최은호교수, 서흥석교수, 최창의교수, (주)삼안 조경준

나. 제출의견

○ 최창의 교수 :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음.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원확보방안에 노력해야 할 것임

○ 최은호 교수 : 1) 하천 분류와 지류의 유로방향 조정, 제방 법선조정 및 사업시행 후 유속변화를 고려한 계획 수립

2)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구분하여 사업계획 수립

3) 하천의 환경보전 기능강화, 하천부지의 매입 등 장기적인 계획 수립

평창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추진 현황

1. 계획의 개요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평창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
- 수립대상 : 1읍 7개면
- 대상재해 : 하상준설 및 유지시설, 사방댐, 하천재해, 내수재해, 토사재해, 사면재해 등
- 용역비 : 1,577백만원
- 용역기간 : 2008. 10.27 ~ 2011. 05. 21
- 시행자 : (주)이산 외 1개사

2. 추진현황 및 계획

□ 지금까지 추진현황

- 2009. 10. 27 : 용역착수
- 2009. 01 ~ 12 : 현장조사
- 2009. 09. ~ 10 : 주민설문조사
- 2010. 03 ~ 05 : 재해위험지구선정 현장조사
- 2010. 06. ~ 09 :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
- 2010. 10 ~ 11 : 전문가 자문 의견
- 2010. 11. 26 : 주민공청회 실시
- 2010. 12 ~ 2011. 1 : 주민공청회 후 의견수렴 현지확인 조사
- 2011. 02월 : 의회 의견청취

□ 향후계획

- 2011. 03월 : 강원도 협의
- 2011. 04월 : 소방방재청 승인신청

3. 풍수해 대상 유형별 조사결과(총괄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합 계	하 상 준 설	하상유지 시 설	사방댐	하 천 재 해	내 수 재 해	토 사 재 해	사 면 재 해
계	개소수	350	18	26	61	103	8	63	71
	금 액	411,391	35,334	3,199	13,437	311,088	15,983	22,625	9,725
평창읍	개소수	60	7	4	5	22	2	6	14
	금 액	99,227	20,589	276	941	58,854	10,500	7,171	896
미탄면	개소수	41	1	2	5	14	-	8	11
	금 액	30,090	50	124	1,156	26,509	0	1,436	815
방림면	개소수	31	-	6	1	13	-	7	4
	금 액	37,849	0	327	238	35,717	0	1,170	397
대화면	개소수	39	1	6	7	12	1	8	4
	금 액	76,691	7,803	1,108	1,332	60,672	2,752	2,804	220
봉평면	개소수	40	1	1	8	18	1	4	7
	금 액	40,696	979	300	3,554	33,402	400	1,569	492
용평면	개소수	34	-	2	13	4	1	10	4
	금 액	16,924	0	150	2,758	10,941	428	2,438	209
진부면	개소수	72	5	4	19	11	2	11	20
	금 액	60,729	5,372	877	2,926	40,766	1,582	3,486	5,720
대관령면	개소수	33	3	1	3	9	1	9	7
	금 액	49,185	541	37	532	44,227	321	2,551	976

관계법령 발취

□ 자연재해대책법

제16조 (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)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·군·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.

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

제13조 (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)

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,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,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